

『2026년 서울시 기후테크기업 IR 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서울시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IR 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
- (사업기간) 2026. 6월 ~ 2026. 10월
- (사업내용) 우수한 기후테크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수출을 지원하여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
-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기후테크*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하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업력 무관)
 - * 기후기술법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38대 기술' 에 해당하는 기술(공고문 부록 참조)
- (지원규모) 11개사
- (지원방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해외 출장 시 통역 및 경비 지원
- (선정방법)
 - (서면심사) 지원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
 -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일 경우 예선 가점 부여
 - (결과 발표) 각 단계별로 선정기업에 한 해 개별 연락

2 추진일정

일정	추진절차	비고
6월 8일~6월 26일	· 2026년 기후테크기업 IR컨설팅 및 해외 투자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6월 27일~7월 3일	· 서면심사 (적격심사, 서면평가) 진행 - (결과발표) 선정 기업에게 개별 연락	
7월~9월	· 선정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IR 컨설팅 수행	
7월	· 해외 투자유치 준비 및 지원을 위한 세미나 진행	
9월 초	· 현지(중국 항저우) 해외 투자상담회 개최	
10월	· 해외 투자상담회 후속 교육 프로그램 개최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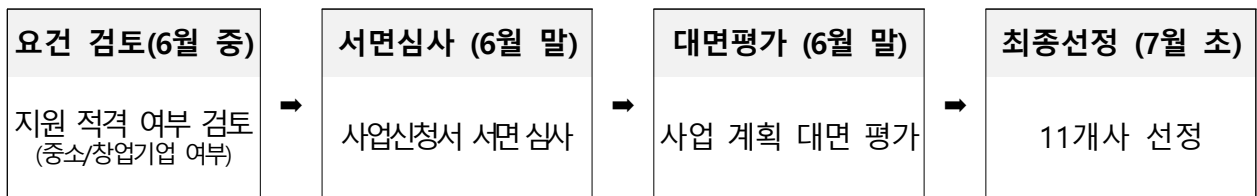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
 - (소재지*) 공고일 기준 본사 및 지점, 지역지사, 연구소 등 모두 해당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
 - (업종) 「기후기술법」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를 활용한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제품
 - * 공고문·신청서 부록 참조
- (유의사항) 선정 이후 지원되는 세미나, 교육 및 해외 투자상담회는 대표자 참석이 필수이며, 대표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임원급 관계자에 한하여 참석을 인정함

4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내용)

-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효과적인 기술
- 보유 기술 및 제품이 투자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며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모델

○ (선정절차)



※ 상기 평가단계는 신청 규모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 심사만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기업 및 최종 선정기업은 별도 연락 예정(추진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면심사 지원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평가
 - (적격심사) ①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의 사업장 주소, ②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적합여부 평가
 - (서면평가) 참가신청서, 회사소개서 토대로 평가 진행

○ (평가위원) 기후/IR 및 해외진출 분야 관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선발*) 전문가 평가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 제외 후 합산 평균

* 동점자의 경우 사업 계획 필요성 > 사업 확장성 > 기술적 우수성 > 지속가능성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점수
사업 계획 필요성	· (중요성) 대상 기후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시급성(시의성) · (영향범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기여도	30
사업 확장성	· (적합성) 계획의 구체성 및 수요기업(기관)의 사업 확장 의지 · (시장성) 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영역 확장 가능성	30
기술적 우수성	· (기술개발역량) 기술 개발을 위한 인적·기술적·조직적 역량의 우수성 · (경쟁력)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 기여도, 기술적 장점 및 우위성	20
지속가능성	· (환경적 기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기여) 대상 과제 수행이 사회적 또는 산업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20
(가점)	· (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고령자친화기업 · (적용) 총점(100점) 내 평가항목 합산, 초과 시 미반영	(5)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6월 8일 ~ 6월 21일

○ (신청방법)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구글폼 링크 : <https://forms.gle/6QSPB62qVZyqGRav9>

- 신청서 양식은 함께 홍보되는 양식 활용
-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제출서류 누락 접수되는 경우 선정 과정에서 미선정될 수 있음)
- 신청 마감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해당하는 서류 일괄 제출

구분	목록	필수여부
양식	[양식 제1호] 참가신청서	필수
	[양식 제2호]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그 외	[첨부] 회사소개서(IR 자료) 1부	필수
	[첨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서울시 소재의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의 사업장 주소 반영 必	필수
	[첨부]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1부	필수
	[첨부]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1부	필수
	[첨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첨부] 가점 증빙서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해당 시

○ (문의처) 제타플랜인베스트 컨설팅본부 사업 담당자

- 이메일 : bkh@zetaplan.co.kr
- 연락처 : 070-8129-5884

○ (유의사항)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록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 활용 기후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모집단 표본설계 대상)		기술 세부내용 고시 (소분류 수준)	기술 정의
	법항목	중분류(안)		
01. 감축 (규칙 제2조 제2조)	(규칙 제2조 1항 제1호)	01. 태양광.열(1,640)	01. 태양광 기술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을 흡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02. 태양열 기술	· 태양복사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02. 풍력(318)	03. 풍력 기술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03. 해양 및 수력에너지 (184)	04. 해양에너지 기술	· 해양의 조류, 조력, 파력 온도차 또는 염분차 등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05. 수력 기술	·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04. 수열 및 지열(175)	06. 수열 기술	· 해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07. 지열 기술	· 지하수 또는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05. 바이오(187)	08. 바이오에너지 기술	· 바이오매스(유기성 생물체의 총칭, 이하 같다)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연료로 변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06. 수소암모니아(197)	09.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	·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전기화학반응 또는 연소반응 등을 통해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기술
		07. 비재생에너지(334)	10. 석탄액화·가스화 기술	· 석탄 등의 원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11. 원자력 기술	·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열 또는 수소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원자력 시스템을 개량하는 기술 · 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을 가진 원자력 시스템을 설계·건설 또는 운영하는 기술
			12. 핵융합에너지 기술	·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
	(규칙 제2조 1항 제2호)	08. 수소바이오매스(338)	13. 수소 기술	·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운송하여 활용하는 기술
			14. 바이오매스 기술	· 경제적으로 대량 확보한 바이오매스를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하여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거나, 화학연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09. 폐자원(1,093)	15. 폐자원 기술	·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기술 · 생활·산업·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분야의 폐기물이나 활용가치가 적어진 폐자원 등을 유용한 연료·원료로 전환 또는 활용하는 기술
	(규칙 제2조	10. 발전효율(828)	16. 발전효율 기술	· 기존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1항 제3호)				· 발전과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11. 산업효율(3,477)	17. 산업효율 기술		· 산업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저탄소고효율의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기술
	12. 수송효율(1,031)	18. 수송효율 기술		· 수송 모빌리티(승용·상용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13. 건물효율(961)	19. 건물효율 기술		·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 향상에 필요한 외피나 설비 관련 기술 또는 ICT 기반 운영기술
(규칙 제2조 1항 제4호)	14. 포집/저장/흡수/대체 (345)	20.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 기술		·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 저장소에 격리하는 기술이나 또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하거나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21. 메탄(CH4) 처리 기술		· 축산, 농업 등에서 배출된 메탄을 포집하여 연료 또는 유용한 화학물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메탄 발생 자체를 저감시키는 기술
		22. 기타 온실가스 처리 및 대체 기술		· 이산화탄소, 메탄 외의 온실가스를 처리 또는 재활용하거나 온실가스가 아닌 가스로 대체하는 기술

			23. 탄소흡수원 기술	· 육상 또는 해양 생태계에 대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
	(규칙 제2조 1항 제5호)	15. 전력통합(1,177)	24. 전력 통합 기술	· 기존의 전력망(grid)에 분산전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반의 전력 네트워크 기술
			25. 열 통합 기술	· 다양한 열원의 활용 및 저장 기술 · 효율적인 열 공급 기술 ·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양방향 열거래 등을 포함한 열 네트워크 기술
			26.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기술	·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기를 열, 가스 또는 연료·원료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기술
02. 적응 (규칙 제3조 제3호)	(규칙 제3조 1항 제1호)	16. 기후변화 모니터링 (138)	27.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기술	· 지구시스템(대기, 해양, 지면, 빙권, 식생 등)의 다양한 기후환경 요소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기술 · 현장 관측 또는 위성, 항공, 부이 등의 원격관측 기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기술

				·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감지하는 기술
			28. 기후변화 예측 기술	· 미래 사회·경제 변화와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기술 · 미래 기후환경 요소(기온, 강수량, 해수면 등)를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평가하여 정확도를 향상하는 기술
(규칙 제3조 1항 제2호)	17. 기후영향평가 및 진단(53)	29.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술	· 기후변화가 다양한 부문(건강, 물, 국토·연안, 농수산, 생태계, 산업 등)과 계층,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기술	
		30.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기술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부문(건강, 물, 국토·연안, 농수산, 생태계, 산업 등), 계층, 지역의 취약성(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고려)과 위험성(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등 고려)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기술	
(규칙 제3조 1항 제3호)	18. 건강(213)	31. 건강 부문 기술	·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증가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 및 급성·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 · 기상재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	

		19. 물(1,796)	32. 물 부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증가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감염병 및 급성·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 · 기상재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
		20. 농축수산(948)	34. 농축수산 부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변화 및 공급 변동에 대응하는 기술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농축산·양식시설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보강하는 기술
		21. 기타 탄력성 강화 (380)	33. 국토·연안 부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과 도시, 국토·연안공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강화하는 기술 · 자연재해(홍수, 폭염, 한파, 태풍, 해일 등)로 인한 직접 및 연계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술
			35. 산림·생태계 부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기술 ·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기술
			36. 산업·에너지 부문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에너지시설과 해당 분야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산업 공정 전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간접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기술
(규칙 제3조)	22. 적응기반(99)	37. 적응조치의 효과평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정책의 효과를 검증·분석·평가하는 기술 	

				· 기후변화 적응 효과를 예측하는 기술
	1항 제4호)		38. 기후변화 적응기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 정보(통계 및 공간정보 등)를 생산·축적·검증 및 활용·확산하는 기술 · 기후변화 적응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적응 교육에 기여하는 기술